

제1회 「소비자정책협의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월 31일(화) 소비자문제연구하는시민의모임 등 12개 소비자단체의 대표와 한국소비자보호원장 및 학계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소비자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소비자관련 정책에 대한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였다.

동 협의회는 최근 세계화와 정보화가 가속화되면서 시장구조가 소비자 중심으로 재편됨에 따라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 여부가 기업의 성패는 물론 시장경제체제의 원활한 작동 여부를 결정하게 되기 때문에 소비자정책의 강화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 현 상황을 반영하여 개최된 것이다. 동 협의회에서는 먼저 『소비자정책협의회설치및운영규정』을 의결하여 협의회 운영을 제도화하였으며, 현재 공정위가 검토하고 있는 다단계판매 취급품목의 가격 상한선인 100만원을 조정하고 백화점 등의 과도한 경품제공행위에 대한 규제문제 등 소비자관련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또한, 「한국YMCA전국연맹」 등 7개 단체의 공정거래모니터 운영 및 「소비자문제를생각하는시민의모임」 등의 소비자 피해사례 실태조사 등 공정위와 소비자단체간의 공동프로젝트의 운영에 대해서도 점검했다.

또한 공정위는 소비자단체에 중요정보고시 대

상으로 추가할 업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것과 사실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광고실증제의 적용이 필요한 표시·광고에 대해 적극적인 신고를 요청했다. 그리고 임시중지명령 요청권이 있는 소비자단체와 소비자보호원 등에 대해 관련 시장이나 경쟁사업자 및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명백한 부당성 및 회복할 수 없는 피해예방 등 임시중지명령의 요건을 엄격히 심사하여 동 요건에 해당하는 표시·광고에 대하여만 임시중지명령을 요청하도록 당부하는 등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표시·광고법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소비자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했으며, 전자상거래 표준약관 및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지침의 제정을 위한 의견수렴 과정에서 소비자단체의 적극적인 의견 제시와 건의를 당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단체의 권한이 커짐에 따라 앞으로 『소비자정책협의회』를 연 1~2회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소비자의 입장과 의견을 체계적으로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소비자 위주의 실효성 있는 정책수립 및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며, 공정위의 경제분야 규제개혁 추진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소비자단체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다.

토막상식

순원출자 예를 들어 그룹 소속 A계열사가 B계열사에, B는 C에, C는 다시 A에 출자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자본투입 없이 장부상 자본금을 늘리는 효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순원출자를 확대하면 자본금의 증가 없이 부채비율을 축소할 수 있고 계열사 내부지분율을 높여 미미한 지분의 총수가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도 있다. 유상증자를 통해 부실계열사를 지원하는 데도 용이하다.

제4차 한·미 경쟁정책협의회 참가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99년 9월 9일(목) 전윤철 공정거래위원장과 관련 국·과장 등 우리측 대표단 4명과 피토프스키(Robert Pitofsky) 연방거래위원회 위원장과 클라인(Joel I. Klien) 법무성 독점담당차관보를 비롯한 미국 경쟁정책 양대기관의 주요간부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 제4차 한·미 경쟁정책협의회에 참석하였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하는 동 협의회를 통해 양국의 경쟁당국은 정례적으로 서로 교차 방문하여 경쟁정책 집행 경험을 공유하고 경쟁정책 분야의 국제적 논의 동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가운데 상호간의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번 한·미 경쟁정책협의회에서는 ① 경쟁정책의 최근 동향, ② 기업결합 주요사례 및 최근 동향, ③ 주요 심결사례, ④ 소비자 보호시책 및 ⑤ 국제협력관계 등을 의제로 폭넓은 의견교환이 이루어졌다.

동 협의회에서 우리측 대표단은 최근의 경쟁정책 동향에 대해서는 공정경쟁질서의 강화를 위한 최근의 법률개정 주요내용과 부당내부거래 조사 등 기업구조조정 추진 및 경쟁촉진형의 경제구조 마련을 위한 공정위의 역할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기업결합에 대한 정책동향 및 최근의 기업결합

추세와 주요 사례 등과 공동행위 부문 및 수직제한 부문에 대한 주요 심결사례 및 조치내용 등에 대해 설명하였다. 또한 소비자보호 시책에 대해서는 한국의 소비자행정 추진체계와 공정거래위원회가 담당하는 소비자시책의 범위 및 향후 소비자시책의 발전방향을 설명하였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국제협력 추진내용 및 한·미 양국간의 국제협력강화 방안 등에 대해서도 설명하였다.

동 협의회를 마친 후 양국 경쟁당국은 동 협의회 결과에 대해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했으며, 향후 좀더 긴밀한 협력관계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동 협의회에 앞서 전윤철 위원장은 멕시코 연방경쟁위원회 우가르테 위원장의 초청으로 '99년 9월 6일(월) 멕시코 연방경쟁위원회를 공식 방문하여 양 경쟁당국간의 국제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9월 10일(금)에는 미국 조지타운대 법대가 주최하는 한국 경쟁정책 설명회에 참석하여 「한국의 기업구조조정과 경쟁정책의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미 관계, 학계, 법조계 및 언론계 인사 100여명에게 우리 나라의 기업구조조정과 경쟁정책 전반에 관하여 강연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토막상식

사외이사제 대주주 영향을 받지 않는 외부 전문가들을 이사회에 참여시키는 제도. 경영감시를 통한 공정한 경쟁과 이미지 쇄신은 물론 전문가를 경영에 참여시킴으로써 기업경영에 전문지식을 활용하는 데 목적이 있다. 미국 등 선진국은 상장기업 이사의 절반 정도가 사외이사로 구성돼 기업권력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고 있다.

제4회 국제 경쟁정책워크샵 개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9월 6일(월)부터 9월 10일(금)까지의 기간 동안 서울 타워호텔에서 개도국 경쟁정책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제4회 국제 경쟁정책워크샵』을 개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개도국에 대한 기술지원과 함께 APEC지역 경쟁당국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 '96년도부터 동 워크샵을 매년 개최해오고 있으며, OECD에서도 동 행사가 크게 유용하다고 평가하여 지난 '97년도부터 강사를 OECD 비용으로 파견해오고 있다.

이번에 네 번째로 개최된 동 워크샵에는 10개 APEC 국가를 비롯하여 14개국 21명이 참가하여 OECD 경쟁정책위원회의 F. Jenny의장 등 경쟁정책 분야의 국제적 전문가 5인과 공정위 한철수 국제업무2과장 등 국내 전문가 3인이 강사로 참여

하여 경쟁법과 구조조정, 독점 및 합병, 우월적 지위의 남용 및 수직적 제한 등 경쟁법의 핵심 사항에 대해 논의하였다.

동 워크샵은 우리 나라가 지난 18년간의 경쟁법 운영경험을 개도국에게 전수하는 장으로써 경쟁정책의 세계적 확산에 기여함으로써 WTO, OECD 등 국제무대에서의 우리 나라의 위상을 제고하고 그 역할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루마니아 경쟁위원회 의장, 터키 경쟁위원회 부의장, 파키스탄 상무부 차관보 등 고위급 인사들이 다수 참가하여 우리 나라의 경제협력 기반을 넓히는 계기가 되었으며, 또한 뉴라운드 문제가 논의될 금년 12월 WTO 각료회의를 앞두고 개도국과의 공조관계 강화에도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된다.

< 제4회 국제 경쟁정책워크샵 강사 및 주제 >

성 명	직 책	주 제
Frederic Jenny	OECD 경쟁위원회 의장 및 프랑스 경쟁위원회 부의장	▶ 기초연설 - 세계화시대의 경쟁정책 ▶ 경제개발과 경쟁정책
Philippe Brusick	UNCTAD 경쟁소비자정책과 과장	▶ 국제기구에서의 경쟁정책 논의
Ms. Suzanne Copley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 국장	▶ 자연독점과 경쟁/규제관계
Paolo Saba	OECD 경쟁위원회 자문관	▶ 경제개발과 경쟁정책
Gwilym Allen	캐나다 경쟁당국 사무처장 (Assistant Deputy Commissioner)	▶ 합병통제와 독점
한 철 수	공정위 국제업무2과장	▶ 수평협정
신 광 식	KDI 연구위원	▶ 시장지배력남용/수직적 제한
김 진 국	건양대학교 교수	▶ 구조조정·민영화 과정에서 경쟁정책의 역할

전자상거래 이용약관사용실태 조사 결과 및 표준약관 제정 추진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9월 17일(금) 전자상거래 이용약관과 관련하여 실시한 사용실태 조사 결과 및 전자상거래 분야의 표준약관 제정 추진 현황에 대해 발표했다.

최근 인터넷의 확산과 이를 통한 전자상거래의 급증으로 해외의 전자상거래 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고, 국내의 전자상거래 시장도 현재로서는 배송체계의 비효율성, 전자인증제도의 미발달, 개인정보의 유출 우려 등의 문제로 본격적인 상거래 형성을 제약하고 있어 아직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이지만, 국내 인터넷 사용자 수가 최근 2년간 3배 이상 증가하였고 시장규모도 연평균 117%씩 성장하고 있는 등 빠른 속도로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에 따라 공정위가 전자상거래 분야의 이용약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된 것이다.

전자상거래상의 소비자문제는 종래의 소비자문제와는 다르게 사기·기만행위, 개인비밀정보의 유출, 당사자 본인 여부의 확인 곤란, 결제수단의 불안정성 등 다양하고 복잡한 형태를 띠고 있어 일반거래에 비해 소비자 피해가 보다 심각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터넷 이용의 증가로 전

자상거래가 급증함에 따라 인터넷 사이트상의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인지도가 높은 국내 주요쇼핑몰 127개 업체 중 주소가 확인된 92개 업체에 대하여 '99년 6월 14일부터 7월 30일까지의 기간 동안 이용약관의 사용 실태를 조사하였다.

공정위의 동 실태조사 결과 조사대상인 92개 전자상거래 사업자 중 고객용 약관을 사용하고 있는 업체는 전체의 41%에 불과한 38개사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대부분의 이용약관 내용이 방문판매법상의 통신판매 규정을 인용하였거나 쇼핑 이용안내문 성격으로서 전자상거래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은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고, 경우에 따라서 포괄적 계약해지조항, 일방적 재판관할조항 등과 같은 불공정 혐의조항 등을 사용한 경우도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38개 약관사용업체 외의 미사용업체는 일부 업체는 필요성을 인정하여 초안을 준비중인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약관 미사용업체가 홍보 목적으로 쇼핑몰 인터넷 주소를 개설한 업체들로서 거래규모나 이용규모가 적어 아직은 별도 약관 사용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주요 피해사례

- 온라인을 통한 소프트웨어 등을 제공해주기로 하고서는 대금만을 받은 사례
- 주문한 물건을 발송해주지 않거나 손상된 제품을 발송해주지 않는 사례
- 주문한 내용과 다른 제품을 보내주는 사례
- 인터넷 경매에서 담합하여 낙찰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낙찰된 물건을 보내주지 않는 사례
- 재택근무를 통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광고한 후 회원가입비나 소개비만을 받은 사례
- 기타 피라미드형 조직형태를 이용하여 회비를 가로채는 사례 등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와 협조하여 사업자가 현재 사용중인 전자상거래 이용약관상의 불공정 소지가 있는 조항을 자진하여 시정토록 하고, 전자상거래상의 분쟁 해결 및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전문가와 관련기관의 의견수렴 및 공청회 등을 통해 금년 중에 고객용 전자상거래 표준약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의 이번 전자상거래 관련 약관 실태조사는 최근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전자상거래의 이용약관의 문제점 등을 적출·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전자상거래 사용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분쟁의 사전방지를 통해 소비자권익의 보호는 물론 사업자의 신뢰를 제고하고 건전한 계약질서와 관행의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현재 공정위가 추진중인 표준약관이 제정될 경우 불공정약관조항과 관련한 분쟁이 크게 감소되며, 사업자와 이용자 상호간의 신뢰성을 높여 거래를 활성화되는 것은 물론 전자상거래의 초기 단계에서 공정거래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전자상거래 약관 관련 불공정 혐의조항 및 이유 ◆

약 관 조 항	이 유
<p>① 개인정보 누출시 사업자책임 배제조항</p> <p>-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등에 의한 책임은 "해당 담당자"가 짐</p>	<p>☞ 개인정보 누출시 그에 대한 책임은 귀책사유 여부에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담당자만 책임을 지게 하고 사업자의 책임을 배제하는 등 동 조항은 사업자, 이행보조자 또는 피해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임</p>
<p>② 일방적인 계약내용 결정조항</p> <p>-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업자가 정한 기준에 의함</p>	<p>☞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당사자가 합의하여 결정하고 합의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보충되어야 함에도 사업자가 정한 기준에 의하도록 함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임</p>
<p>③ 부당한 회원자격 정지 및 박탈조항</p> <p>- 「별도의 사전 통보절차 없이 회원자격을 정지하거나 강제 탈퇴」, 「쇼핑몰의 판단 하에 임의적으로 자격박탈」, 「기타 회원으로서의 자격을 지속시키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갑의 사업에 심대한 손실을 초래하였다고 갑이 판단하는 경우 즉시 해지」</p>	<p>☞ 회원자격 정지·박탈 및 계약해지사유는 구체적으로 열거되고 그 내용도 타당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자격정지·박탈 및 해지시에도 채무 이행이 불가능해진 때 관련법규에서 금지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당한 기간 이행을 최고한 후 회원자격을 정지·박탈 및 해지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임에도 포괄적인 사유 및 최고절차 없이 해지하도록 규정한 동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임</p>
<p>④ 청약 철회권 행사제한 및 환불일 지연조항</p> <p>- 「제공일로부터 5일/7일/10일/15일 이내에 취소할 수 있으며」, 「회수한 날로부터 3일/7일/10일 이내에 교환 또는 환불조치」, 「하자상품의 이의제기는 도착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함/15일 이내에 교환만 가능」, 「개봉된 상품(완구류)은 반품 불가」</p>	<p>☞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은 상품/용역을 인도·제공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통신판매업자는 반환받은 날의 다음 영업일 이내에 환불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동 약관조항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없이 배제하는 조항임</p>

약 관 조 항	이 유
<p>⑤ 영수증·세금계산서 송달비 전가조항</p> <p>- 고객이 주문한 상품·용역이 제공된 이후에 회사에 대하여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를 요구한 경우 그 배송 및 제공비용은 모두 고객의 부담</p>	<p>☞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재화가 인도되는 시기나 역무가 제공되는 시기에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고객에게 교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임에 비추어 볼 때, 동 조항은 고객에게 불리한 조항임</p>
<p>⑥ 면책조항</p> <p>- 서비스요금이 무료인 동안 서비스이용과 관련하여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사업자의 귀책사유 유무를 따지지 않고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등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임</p>	<p>☞ 무료 서비스기간 중 서비스이용과 관련하여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사업자의 귀책사유 유무를 따지지 않고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등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임</p>
<p>⑦ 부당한 재판관할 조항</p> <p>- 서울민사지방법원/회사의 본사소재지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함</p>	<p>☞ 민사소송법상의 규정보다 고객의 응소상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관할 조항임</p>

◆ 전자상거래 관련 현 이용약관의 문제점 및 보완사항 ◆

문 제 점	보완검토사항
<p><고객 불만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인터넷 쇼핑을 위하여 제공되는 화면에는 회원가입, 구매방법, 결제방법, 배달, 교환 및 환불 등에 관하여만 간략한 설명이 기재되어 있을 뿐임 • 배송료에 관한 정보를 밝히지 않았음에도 별도의 배송료를 요구하고 있음 • 주문한 상품이 도착하는 데 많은 시일이 걸리거나 도착하지 않음 <p><사업자 불만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부 고객의 경우 물건을 주문 후 반품 가능기간이 만료하는 날에 고의로 맞추어 반품/환불을 상습적으로 하거나 반품 및 환불 제도를 악용 • 전자상거래의 특성상 미성년자를 제외한 한정자산자 등의 행위무능력자를 확인하기가 불가능 •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상거래의 보완체계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거래상대방 미확인, 가맹점에 회원정보 노출 등의 문제점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원(이용자)과 사업자의 권리와 책임한도를 명확히 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의무 - 회원 ID, 비밀번호 유출, 대여 및 대리구매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소재 등 ☞ 제품운송에 따른 배송료 명기 ☞ 주문에 따른 제품 수령시까지의 최소기간 명시 ☞ 반품 및 환불기간의 명시 및 조건 ☞ 불량이용자의 요건 정의 ☞ 전자상거래 이용고객 중 행위무능력자(미성년자, 한정자산자, 금치산자)에 대한 쇼핑물 운영자의 책임한계 또는 의무사항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정금액 이상 거래나 특정상품의 구매제한 등의 규제사항을 정하므로써 분쟁을 사전예방할 수 있는 방안 강구 ☞ 개인정보 유출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한 보상규정 명확화 ☞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음을 밝힘

'99년 8월중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 변동

공정거래위원회는 '99년 8월중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가 변동됨에 따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제3항에 의거하여 지난 9월 1일자로 변동내용을 당해회사와 동일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였다. 이에 따라 대규모기업집단 소속으로 새로 편입된 회사는 상호출자금지과 상호채무보증의 금지 등의 각종 공정거래법상의 규제를 받게 된다.

'99년 7월중 30대 대규모기업집단 계열회사는 5개사가 신규편입된 반면, 14개사가 계열제외되어 '99년 9월 1일 현재 30대 대규모기업집단 계열회사는 지난 '99년 4월 1일 686개사에서 636개사로 감소되었다.

또한 기업집단 규모별로는 1~5대 기업집단에서 5개사가 순감하고, 6대 이하 기업집단에서는 4개사가 순감하였다.

◇ '99년 8월중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 변동개요 ◇

(단위 : 개사)

구 분	'99. 8. 2	편 입			제 외						증 감	'99. 9. 1
		회사 설립	주식 취득	계	합병	청산	지분 매각	친족 분리	기타	계		
전 체	645	4	1	5	5	2	6	-	1	14	△ 9	636
1~5대	202	1	-	1	2	2	1	-	1	6	△ 5	197
6~30대	443	3	1	4	3	-	5	-	-	8	△ 4	439

◇ '99년 8월중 30대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 변동내용 ◇

◎ 편입 : 5개사(회사설립 4, 주식취득 1)

◎ 제외 : 14개사(합병 5, 지분매각 6, 청산중결 2, 기타 1)

구분	편 입			제 외			증감
	회 사 명	업 종 명	사 유	회 사 명	업 종 명	사 유	
현 대	-	-	-	한소해운(주)	해상운송업	현대상선에 합병	△2
				기아포드 할부금융(주)	기타금융업	청산	
대 우	-	-	-	대우정보시스템(주)	전산용역	지분매각	△2
				대우에스티 반도체설계(주)	반도체설계용역	경영진변동	

구분	편 입			제 외			증감
	회사명	업종명	사유	회사명	업종명	사유	
엘 지	엘지니꼬동제련(주)	비금속광물 제련	회사설립	엘지전자서비스(주)	가전제품수리업	청산	△1
				엘지엔지니어링(주)	설계감리업	엘지건설에 합병	
한 진	-	-	-	한진건설(주)	토목건축공사업	한진중공업에 합병	△2
				한진종합건설(주)	토목건축업		
쌍 용	-	-	-	국민레미콘(주)	반도체제조업	지분매각	△1
롯데	-	-	-	(주)국제신문	신문 및 정기간행물 발행	지분매각	△1
한 솔	(주)한통 엔지니어링	전기통신공사업	주식취득	-	-	-	1
두 산	두산타워 상가관리(주)	건물관리업	회사설립	두산전자(주)	전자제품 제조·판매	(주)두산에 합병	0
코오롱	-	-	-	유니온봉제(주)	봉제임가공업	지분매각	△1
동 양	-	-	-	에셋코리아 투자자문(주)	투자자문업	지분매각	△1
강 원 산 업	-	-	-	경남도시가스(주)	도시가스공급업	지분매각	△1
삼 양	(주)유클릭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설립	-	-	-	2
	(주)당산건설링	기타금융업	회사설립				
계	5			14			△9

신규퇴원사 소개

회원가입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LG.Philips LCD Co.,Ltd

대표 구본준
제조 및 도·소매업
경북 구미시 진평동 542-3